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5. 6. 30

제안자 : 임성수의원외6인

1. 개정사유

- 현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는 의장인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심사토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의회도 소관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현 실태에 맞게 개정코자함.

2. 주요내용

-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의신청)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한다.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의신청)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한다.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16조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제17조 본문중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를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명 : <u>구미시의회청원심사규칙</u>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u>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명 : <u>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u> 제5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u>그 청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서를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u>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